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조승래 · 오세희
백승아 · 문금주 · 이광희
김문수 · 서삼석 · 황명선
안도걸 · 양부남 · 최민희
김원이 · 추미애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.

그런데,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등 유사 법률과 달리,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,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·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·건설·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,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

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).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한국에너지공대”를 “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·건설·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에너지공대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, “운영과 연구”를 “운영, 연구 및 창업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출연금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<u>한국에너지공대</u> 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1조(출연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국에너지공대의</u> <u>설립·건설·연구 및 운영에</u> <u>필요한 경비에</u> <u>충당하도록</u> <u>한</u> <u>국에너지공대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수익사업 등)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·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<u>범위에서</u> <u>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</u> <u>따라</u>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16조(수익사업 등)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·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<u>범위에서</u>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<u>운영과 연구에</u> <u>충당하여야</u> 한다.	② <u>한국에너지공대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.</u> ③ <u>제1항 또는 제2항</u> ----- ----- <u>운영, 연구 및 창업 등</u> -----

<u><신 설></u>	-----. <u>④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	--